

의안번호	2203406
의 퇴 인	황희 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E3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재정 수입은 2026년 1,700만원 등 2026~2029년간 총 59억 7,400만원(연평균 14억 9,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허용 및 이자소득 비과세 (안 제91조의19)	-17	-260	-1,402	-4,296	-5,974	-1,49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에 따라 적금 납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 적용대상(초급간부): 가입일 현재 임용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적용요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 비과세 내용: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초급간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세를 추계대상으로 설정
 -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2026년 1월 1일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 인원에 가입가능기간(개월 수) 및 월별 납입액을 곱하여 총 납입액을 산출하고, 총 납입액에 이자율 및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수감소분 추계
 -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는 장교, 부사관 및 준사관으로서 가입일 현재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36개월 이내에서 남은 복무기간만큼 적금을 가입하고, 월별 납입한도액(40만원)까지 납입한다고 가정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현역 병 기준 99%, 평균 납입액은 39.3만원 수준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 개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장병의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 및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임

[표 2]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개요

구 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
가입기간	최소 1개월 ~ 복무기간별 최대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월 적립한도	최대 40만원 (인당 최대 2계좌, 1계좌당 최대 20만원)
이자율	연 5% 수준 (은행별 구체적인 요건 및 우대이율 상이)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매칭지원금 지원
세제혜택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비 고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소개, 검색일 2024.11.11.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2060000)

나. 추계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 인원은 가입일 현재 임용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 한정
 - 2024년 이후 임용자 규모는 2021~2023년 연평균 임용자 규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복무종류 및 복무기간별 장교·부사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 수 추정

- 장교는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특수사관, 간호사관후보생,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사관학교(육·해·공사)로 구분하고, 부사관은 장기부사관(항공과학고 등), RNTC, 민간부사관, 특전부사관, 현역부사관 및 임기제부사관으로 구분
 - 부사관 중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를 마치고 부사관(하사)로 신분전환 및 추가복무하는 사람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 병 신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 전원이 적금에 가입하고, 가입가능기간(잔여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설정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현역병 기준 99%
 - 부사관 중 현역부사관의 경우 병 복무기간 중 부사관으로 신분전환 및 복무하는 사람이므로, 가입(가능)기간 산정 시 병 복무기간 제외
 - － 병 신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복무 중 신분전환으로 복무기간 등 연장
 - －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부사관은 병 신분으로 평균 7개월 근무 후 신분전환되어 4년간 추가 근무함
- 적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만기(가입기간)까지 유지하며, 가입기간동안 월 납입액은 40만원(최대 한도)으로 가정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평균 납입액은 현역병 기준 39.3만원 수준
- 적금만기(가입기간) 도래 시 즉시 적금이 해지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가정
- 이자소득은 연 5% 이자율을 단리 방식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자소득세율은 분리과세 14% 적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급간부 수에 가입기간 및 월 납입액을 곱하여 총 납입액을 산출하고, 총 납입액에 이자소득세율을 곱하여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초급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허용에 따른 이자소득세 발생 현황(장교)

신분	복무종류 (복무기간)	임용시기	가입(가능)인원		가입 가능기간	가입기간 ³⁾	인당 납입액 ⁴⁾ (단위:만원) (C=B×40)	인당 이자소득 ⁵⁾ (단위:만원) (D=C×연 5%)	인당 이자소득세 ⁶⁾ (단위:만원) (E=D×14%)	총 이자소득세	
			임용시기 ¹⁾	인원 ²⁾						액수 (단위:백만원) (F=E×A)	발생연도 ⁷⁾
장 교	ROTC해군해병 (2년)	매년 3월	2024년	239명	2개월	2개월	80	0.5	0.1	0.2	2026년
			2025년	239명	14개월	14개월	560	17.5	2.5	6	2027년
			2026년	239명	24개월	24개월	960	50.0	7.0	17	2028년
	ROTC육군 (2년 4개월)	매년 3월	2024년	3,384명	6개월	6개월	240	3.5	0.5	17	2026년
			2025년	3,384명	18개월	18개월	720	28.5	4.0	135	2027년
			2026년	3,384명	28개월	28개월	1,120	67.7	9.5	321	2028년
	ROTC공군 (3년)	매년 3월	2024년	120명	14개월	14개월	560	17.5	2.5	3	2027년
			2025년	120명	26개월	26개월	1,040	58.5	8.2	10	2028년
			2026년	120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19	2029년
	학사장교 간부·특수사관 간호사관후보생 (3년)	매년 4~12월	2024년	2,615명	15~23개월	19개월	760	31.7	4.4	116	2027년
			2025년	2,615명	27~35개월	31개월	1,240	82.7	11.6	303	2028년
			2026년	2,615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406	2029년
	3사관 국군간호사관 (6년)	매년 3월	2024년	1,692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63	2029년
			2025년	1,692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63	2029년
			2026년	1,692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63	2029년
	육·해·공군사관 (10년)	매년 3월	2024년	1,758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73	2029년
			2025년	1,758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73	2029년
			2026년	1,758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73	2029년
계										2,960	—

- 주: 1) 가입일(2026.1.1.~2026.12.31.) 기준 임용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2024.1.1. 이후 임용자에 한정
2) 2021~2023년 연평균 신규 임용자 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
3)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가입한다고 가정. 다만,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용이 이루어져 가입가능기간이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예: 학사장교 등)에는 해당 범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산술평균을 가입기간으로 함
4) 인당 최대 납입한도(40만원)까지 납입
5) 이자소득은 연 이자율(5%)을 단리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산
6)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14%
7) 임용시기에 따른 적금 가입기간 만기시기가 속하는 연도

[표 4] 초급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허용에 따른 이자소득세 발생 현황(부서관)

신분	복무종류 (복무기간)	임용시기	가입(가능)인원		·가입 가능기간	가입기간 ³⁾	인당 납입액 ⁴⁾ (단위:만원)	인당 이자소득 ⁵⁾ (단위:만원)	인당 이자소득세 ⁶⁾ (단위:만원)	총 이자소득세	
			임용시기 ¹⁾	인원 ²⁾						액수 (단위:백만원)	발생연도 ⁷⁾
				(A)		(B)	(C=B×40)	(D=C×연 5%)	(E=D×14%)	(F=E×A)	
부 사 관	임 관 시 장 기 (항공과학교 등) (7년)	매 년 3 월	2024년	423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66	2029년
			2025년	423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66	2029년
			2026년	423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66	2029년
	RNTC (4년)	매 년 3 월	2024년	170명	26개월	26개월	1,040	58.5	8.2	14	2028년
			2025년	170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6	2029년
			2026년	170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26	2029년
	민간특전부서관 (4년)	매 년 1~12월	2024년	5,138명	25~36개월	31개월	1,240	82.7	11.6	595	2028년
			2025년	5,138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798	2029년
			2026년	5,138명	36개월	36개월	1,440	111.0	15.5	798	2029년
	현역부서관 (4년)	매 년 1~12월	2024년	2,047명	18~29개월 ⁸⁾	24개월 ⁸⁾	960	50.0	7.0	143	2028년
			2025년	2,047명	29개월 ⁸⁾	29개월 ⁸⁾	1,160	72.5	10.2	208	2029년
			2026년	2,047명	29개월 ⁸⁾	29개월 ⁸⁾	1,160	72.5	10.2	208	2029년
계										3,014	—

주: 1) 가입일(2026.1.1.~2026.12.31.) 기준 임용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2024.1.1. 이후 임용자에 한정

2) 2021~2023년 연평균 신규 임용자 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

3)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가입한다고 가정. 다만,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용이 이루어져 가입가능기간이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예: 민간·특전부서관 등)에는 해당 범위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산술평균을 가입기간으로 함

4) 인당 최대 납입한도(40만원)까지 납입

5) 이자소득은 연 이자율(5%)을 단리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산

6)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14%

7) 임용시기에 따른 적금 가입기간 만기시기가 속하는 연도

8) 현역부서관의 병 복무기간 7개월 차감

-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되므로,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에 따라 이자소득세수는 총 59억 7,400만원(장교 29억 6,000만원, 부사관 30억 1,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5] 개정안에 따른 이자소득세수 감소효과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연평균
장교	-17	-260	-650	-2,033	-2,960	-740
부사관	-	-	-752	-2,262	-3,014	-1,507
계	-17	-260	-1,402	-4,296	-5,974	-1,494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초급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700만원 등 2026~2029년간 총 59억 7,400만원(연평균 14억 9,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누적	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허용 및 이자소득 비과세 (안 제91조의19)	-17	-260	-1,402	-4,296	-5,974	-1,49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 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